
**2018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사전기획형 현장애로기술]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

2018. 2.

 **IPET**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목 차

I . 공고 개요	1
II . 신청자격 및 제한	2
III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6
IV . 선정절차 및 기준	10

I

공고 개요

- 사업목적 : 식품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 공고규모 : '18년도 정부출연금 10억 원 이내
 - 과제당 총 연구기간 1년, 지원 한도는 1억 원 이내
 - *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시킬 예정임
 -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총 연구기간(1년) : 컨설팅기간(2개월 이내)+연구기간
- 지원 분야 : 단기간, 소규모 예산을 투입한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 현장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 *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참조)

<참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가공식품”의 정의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지원내용
 - 총 지원금액(1억원 이내) : 연구기획·컨설팅 비용 + 본 연구비용
 - * 연구기획·컨설팅 비용은 총 지원금(정부출연금)의 10%로 계상
 - (기획단계) 선정된 연구기관은 전문컨설팅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컨설팅 의견서와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기한 엄수)
- (연구단계)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본 연구 추진
- 공고기간 : '18. 2. 1.(목) ~ '18. 3. 9.(금), 37일간
- 접수기간 : '18. 2. 26.(월) ~ '18. 3. 9.(금) 18:00 까지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관련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문의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관련 : 사업기획실(031-420-6754, 6756, 6759)
 -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일정 관련 : 식품사업실(031-420-6772~4)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031-420-6844, 6845, 6846)

II

신청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소기업*이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기업
 - 사업개시일이 1년 이상(접수 마감일 기준)

- 1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식품관련 매출실적이 당해 과제의 정부출연금 20% 이상 존재
- 협동, 위탁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단, 예외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과제수 제한기준(3책 5공)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
<p>※ 공통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경상연구과제(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5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6. 위탁연구과제
<p>※ 2012.7.2.이후 공고되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정부출연금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2.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은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하 과제)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제2017-5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수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연구자는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 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 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III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수산물 R&D 통합정보 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 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지원분야(내역사업) 필수 입력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신청시 주의사항>

- ① 연구과제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함
- ② 연구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기관(주관, 협동, 위탁 등)이 접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검색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연구기관을 사전에 등록해야 함
- ③ 연구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위탁 등)의 연구실적 등 회원정보를 갱신하시기 바람

○ FRIS(http://www.fris.go.kr) 접속



○ 로그인 후 농식품부 사업참여하기 또는 과제관리로 이동 선택

- 주관·세부·협동·위탁 등 각 연구기관의 기관등록 및 각 연구책임자의 회원가입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정보수정을 완료 한 후 접수하여야 함
- 신규기관 및 연구자 등록은 우측 상단의 기관등록, 회원가입 기능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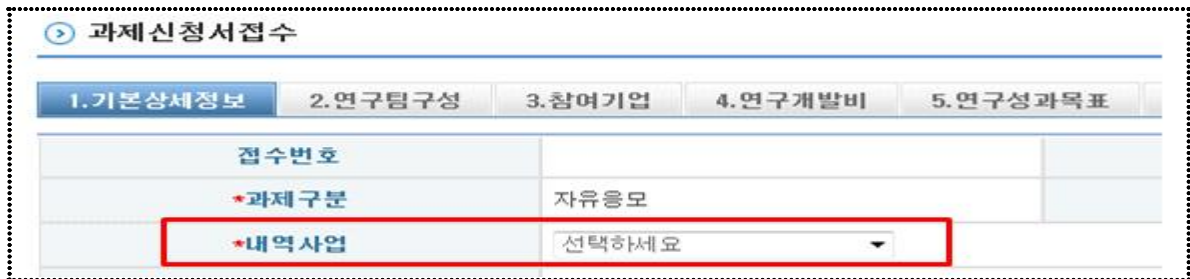
* 연구책임자의 회원가입 시 '전문가/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 '공고/접수' - '과제접수' - 접수대상 사업 선택



○ 지원분야 입력

- 응모하고자 하는 지원분야를 “내역사업” 에서 선택



○ 과제정보 전산 입력

- 기본상세정보, 연구팀구성,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연구성과목표, 요약문/키워드 등을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 도중 중간저장 가능



○ 제출서류 업로드



-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제출서류를 업로드
- 제출서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완료 불가

○ 전산접수중 수령 및 접수완료



□ 제출서류 <공고문 서식 준수>

- ①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2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 ②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붙임 3 서식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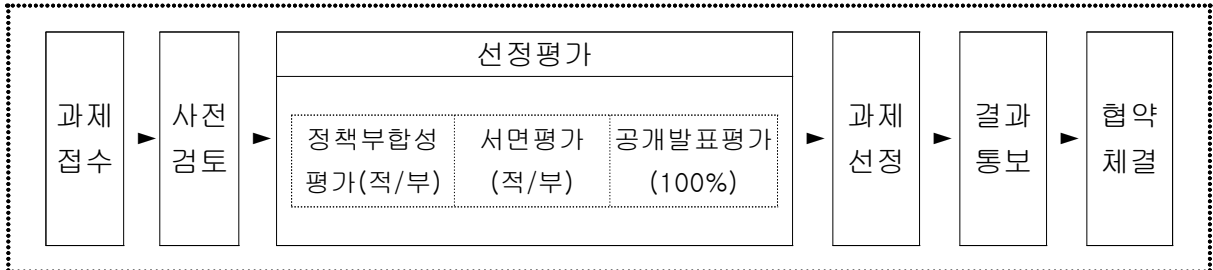
< 제출 시 유의사항 >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등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직인 및 서명을 날인한 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IV

선정절차 및 기준

1. 선정절차



- 공개발표평가 점수를 100%로 반영하여 산출한 종합점수로 평가함
-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선정절차 단계별 추진내용

< 사전검토 >

- 사전검토 목적 : 공고사항에 부합하는 선정평가 대상과제 결정
- 사전검토 항목 : 공고 내용의 충족 여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유무,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유사·중복성 검토 등

< 신청 시 점검사항 >

- ① 접수한 과제가 공고에서 별도로 제시한 지원 자격, RFP의 과제구성요건 등에 부합하는가?
- ② 신청 연구기관이 공고된 '연구기관 신청자격'에 부합하는가?
- ③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능력을 갖추었는가?
- ④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3책5공에 저촉되지 않는가?
- ⑤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중인가?
- ⑥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요구서류 일체의 내용 및 직인·서명 날인이 누락사항 없이 작성되었는가?
- ⑦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요구서류 일체가 온라인으로 정상 제출 되었는가?
- ⑧ 공고한 연구분야와 접수한 과제가 적합한가?

《 검토항목별 세부사항 》

- **(연구기관, 지원 예산 등)** 공고 시 제시한 지원 내용의 부합 여부 검토
 - * 공고에서 별도로 제시한 지원규모 준수
- **(자격 유무)**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유무 검토
 - 연구책임자의 자격 준수 : 공고에서 제시한 자격기준 준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 제한 준수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3개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5개 과제 까지 참여 가능하며, NTIS 및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로 검토
 -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 여부 검토
 -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를 NTIS를 활용하여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기준 준수
 - *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참여율 130%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
- **(신청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일체의 적정성 및 미비사항 검토
- **(유사·중복성)**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내용과의 중복여부는 NTIS와 FRIS를 활용하여 검색한 결과를 선정평가 시 연구과제평가단에 제공하여 검토 후 평가에 반영토록 조치
 - (선행특허조사)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요약서 내용을 토대로 국내외 공개된 특허 및 논문의 조사·분석 실시
 - 특허기술 동향조사 전문기관(특허정보원)에 의뢰하여 조사

< 중복성 검토기준 >

- **중복성의 판단요소** :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 **중복성의 판단기준**
 -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
 - 서로 다른 연구 주체간에 연구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연구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연구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 판단
- **중복성의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연구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 각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사전검토 결과의 활용

- 전문기관장은 사전검토 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부적합, 신청서류 누락,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해당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7조(신청결과 및 사전검토 보고 등)
- 유사·중복성 검토결과, 선행특허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 시 연구과제평가단에 제공하여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부합성평가 >

- 평가방법 : 농식품부 사업담당관(과제활용담당관)이 정책부합성평가 실시
- 평가기간 : 평가 기간 중
- 평가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제9호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명확성
농축산 현장 정책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의 농축산 현장정책과의 부합성 ○ 사업세부 추진방법 및 전략 등의 현장정책과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연구팀 구성정도 ○ 과제의 내용과 연구팀의 전문성 관련정도

정책부합성평가 결과 조치

- 평가는 적부심사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미부합'으로 분류된 과제는 선정대상과제에서 제외함
 -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8조의2(정책부합성평가)에 따라 평가실시자 전원이 '부합'으로 판단한 경우 '부합'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미부합'으로 분류

< 서면평가 >

- 평가방법 : 인터넷을 활용한 연구과제평가단의 온라인 서면평가
- 평가기간 : 평가 기간 중
- 평가기준 :
 - ①연구과제가 1년 이내에 해결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 ②실질적인 기술적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적/부 평가

< 공개발표평가 >

- 평가방법 : 주관연구책임자 구두발표에 의한 공개발표평가
 - 주관연구책임자의 구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세부 및 협동연구책임자의 배석 권장
 - 발표자료 : PPT파일 및 이를 인쇄한 발표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진행
 -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연구개발계획서와 동일한 순서로 구성
- 평가시간
 - 자유응모과제 : 과제별 50분(구두발표 20분, 질의응답 30분)
 - * 평가시간은 평가일정, 대상과제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개발표 대상자 통보 시에 별도 공지함
- 평가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제8호

과제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내용
자유응모	연구수행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목표의 명확성 ◦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 연구범위의 타당성
	연구수행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수행계획의 합리성 ◦ 세부연구과제의 적절성 ◦ 연구범위의 타당성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실용화 전략의 구체성 ◦ 연구개발목표의 혁신성 ◦ 개발기술의 산업화

□ 공개발표평가 결과 조치

- 공개발표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 후보 과제에서 제외함
- 평균점수는 연구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 중 위원별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출
- 과제별 공개발표평가 의견을 종합하여 선정대상과제 제외사유로 활용

< 과제선정 >

□ 과제선정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선정 방법

- 과제·분야별 선정평가 결과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단계별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미부합'으로 평가된 과제는 선정 대상과제에서 제외

□ 종합점수 산출방법

- 공개발표평가 100%로 반영
- 연구개발과제 선정 우대기준 및 방법에 따른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가·감점을 반영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기준 및 적용

구 분	기 준	적용기산일 (기준일)	적용 기간	점수*
가점 부여 항목	최종평가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점
	연구종료 후 3년차 추적평가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5점
	연구종료 후 3년차 추적평가결과 “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2점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에서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자	시상일	2년	3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주관 연구책임자	포상일	2년	3점
	보안과제를 연구계획에 맞춰 종료한 주관연구 책임자	연구개발 협약종료일	2년	3점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2천만원 이상의 기술료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실적을 보고하였거나 정부납부기술료의 누적징수 실적이 2천만원 이상, 또는 3건 이상의 유상기술이전 실적을 보고한 연구책임자	기술실시계약 이 체결된 다음연도 1월 1일	2년	3점
	육성법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획득한 자(기술 사업화지원사업에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신기술 인증통보일	2년	3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증빙서류 제출 시)	입주계약일	2년	1점
감점 부여 항목	기술실시 후,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기관(기업에 한정) 및 연구책임자	제출기한일 다음날	2년	5점
	정부납부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까지 지연한 연구기관(기업에 한정) 및 연구책임자	납부마감일 다음날	2년	5점
	중간평가결과 “미흡” 또는 최종평가결과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통보일	2년	3점
	중간평가결과 “매우 미흡” 또는 최종평가결과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2년	5점
	연구종료 후 3년차 추적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5점
	과제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를 포기한 주관연구기관(기업에 한정) 및 연구책임자	협약포기 또는 연구포기를 전문기관**에 통보한날	3년	5점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지급기한일 다음날	3년	5점
	독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반납마감일 다음날	2년	5점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 및 운영규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책임자	협약의 해약일	3년	10점

	보안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의 조치 및 현황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보고기한일 다음날	2년	5점
	연구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기관(기업에 한함) 및 연구책임자	매년 3월 2일	1년	1점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주관연구기관(기업에 한함) 및 주관연구책임자(기술사업화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한하며 기획지원과제는 제외)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3년	3점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연구비 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책임자	매년 1월 1일	1년	1점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동안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연구비 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책임자	매년 1월 1일	1년	2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 - 연구 또는 정산과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를 누락, 지연, 불성실히 제출한 경우(운영규정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제22조제4항 및 별표 4, 제28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관련 등) 연구책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에 불참한 연구책임자 - 그 밖의 연구관리에 소홀한 것이 명백한 주관 연구책임자	2차 경고 발송일	2년	5점
가점 부여 원칙	가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종합점수가 높은 1개 과제에만,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여			
감점 부여 원칙	감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전체 과제에 부여 최초 '경고'조치 이후 3년간 '경고'를 받지 않거나 2회 누적으로 감점되는 경우 '경고' 소멸			
가·감점 중복 시 부여원칙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되, 합산 후 가점과 감점의 상한은 각각 최대 10점 이내로 함			
참여제한 중복 시	참여제한기간과 감점부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감점이 적용되는 기산일은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함.			

- * 가·감점 부여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이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평가점수에 해당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함
- ** 전문기관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함. 이하 같음
- *** 정당한 사유란 주관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의 장이 부도·법정관리·폐업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기준 및 적용>